
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

제 1-1 판
(2021.6.1. 시행)



충청방역대책본부 · 중앙사고수습본부

[일러두기]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"코로나19") 예방접종의 효과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변경될 경우 이 지침의 내용도 함께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따라서 이 지침을 적용하거나,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침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코로나19 백신 관련 국내 현황(2021.5월 현재)]

- '21.2.26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 실시
[우리나라 도입(예정)된 코로나19 백신]

개발사	아스트라제네카	얀센	화이자	모더나	노바백스▶
플랫폼	바이러스벡터 백신		mRNA 백신		합성항원
접종횟수	2회	1회	2회	2회	2회
접종간격	8주~12주 (허가 4주~12주)	-	21일	28일	21일
국내허가 제품명 (허가일)	한국 아스트라 제네카 코비드-19 백신주 (21.2.10.)	코비드-19 백신얀센주 (21.4.7.)	코미나티주 (21.3.5.)	모더나 코비드-19 백신주 (21.5.21.)	-

▶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

1 기본원칙 및 다른 지침과의 관계

- 예방접종완료자 및 예방접종미완료자도 여전히 대응지침 등 기존 지침의 규제대상이 되며, 생활방역지침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
-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해서만 기존 지침 및 수칙 등에 대한 예외나 특례를 인정
- 다만 다른 지침 및 수칙 등에서 예방접종자 및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 이 지침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 및 수칙 등을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
-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예외·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, 기존의 감염병의심자로 보아 기존 지침 등을 적용

2 정의

- 이 지침에서 “예방접종완료자”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방접종완료를 입증▶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

-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
-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

- ▶ 「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」 제22조에 따른 “예방접종증명서”를 소지하고 있거나,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
- ▶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경우 향후 진위확인·검증 방법이 마련되면,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
 - * 협약 작성이나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,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사전협의 필요

3 확진자 밀접접촉 관련 사항

3-1. 원칙

- 예방접종완료자도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접촉자와 동일하게 역학조사 및 그에 따른 PCR검사 등 조치 실시

3-2. 능동감시 실시

-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 후 능동감시 실시

- ①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, ②무증상일 것 ③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것 ④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, ⑤접촉한 확진자가 남아공·브라질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 (변이바이러스 확인 후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)

- 능동감시 실시 중에는 「능동감시 중 생활수칙」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하며, 위반시 자가격리로 전환

- ▶ 능동감시 실시 요령 [상세 사항은 붙임2 참조]
 - : 자가진단앱을 기반으로 하되, 지자체에서 직접 능동감시 실시
 - :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, PCR검사 실시*
 - * 검사 결과 음성이면 자가격리 해제 후 능동감시 계속
- ▶ 능동감시 기간과 생활수칙 위반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는 생활지원금 등 미지급

3-3. 능동감시 해제

- 능동감시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~7일 및 12~13일이 되는 날 각각 PCR검사를 실시, 모두 음성인 경우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 해제

▶ 향후 예방접종 진행상황, 효과 및 관련 연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 횟수나 시기는 조정 가능

- 위 관련 각 PCR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실시

4 해외입국 관련 사항

4-1. 원칙

-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기존 검역지침 등에 따라 통상의 입국자와 동일하게 PCR검사 등 조치 실시

4-2. 능동감시 실시

- 예방접종완료자▶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 가능, 자가격리 면제 후에는 능동감시 실시

▶ 국내에서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

①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, ② 무증상일 것, ③ 남아공·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

▶ “남아공·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”는 주기적으로 별도 통지

- 능동감시 실시 중에는 「능동감시 중 생활수칙」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, 위반시 자가격리로 전환

▶ 능동감시 실시 요령 [상세 사항은 붙임2 참조]

: 자가진단앱을 기반으로 하되, 지자체에서 직접 능동감시 실시

: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, PCR검사 실시*

* 검사 결과 음성이면 자가격리 해제 후 능동감시 계속

4-3. 능동감시 해제

- 능동감시 중 최종입국일로부터 6~7일 및 12~13일이 되는 날 각각 PCR검사를 실시, 모두 음성인 경우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 해제

▶ 향후 예방접종 진행상황, 효과 및 관련 연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 횟수나 시기는 조정 가능

- 위 관련 각 PCR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실시

[참고 : 향후 입국 유형별 절차]

구분	일반 입국자	예방접종완료자▶
제출서류	PCR음성 확인서	PCR음성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
입국시 검사	○	○
자가격리 여부 (검사결과 음성)	○	X (능동감시만 실시)
관련 설치 앱	자가격리앱	자가진단앱
▶ 남아공·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 제외 * 남아공·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주기적으로 별도 통지		
▶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경우 향후 진위확인·검증 방법이 마련되면,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		

5 방역수칙 적용 관련

-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방역수칙은 예방접종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된 지침이나 수칙을 따름 (중수본 생활방역팀, 방대본 환자관리·지침팀 등)

6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

- 감염취약시설 등의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사항은 예방접종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문으로 지속적으로 통지·관리(방대본 진단검사운영팀)
- 단, 예방접종완료자는 감염취약시설, 교정시설,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

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자가격리/능동감시 안내(밀접접촉 대상자용)

귀하께서는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대상자에 해당됩니다. 다만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대신하여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. **실거주지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**

I 능동감시 전환 조건

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**예방접종완료자**였을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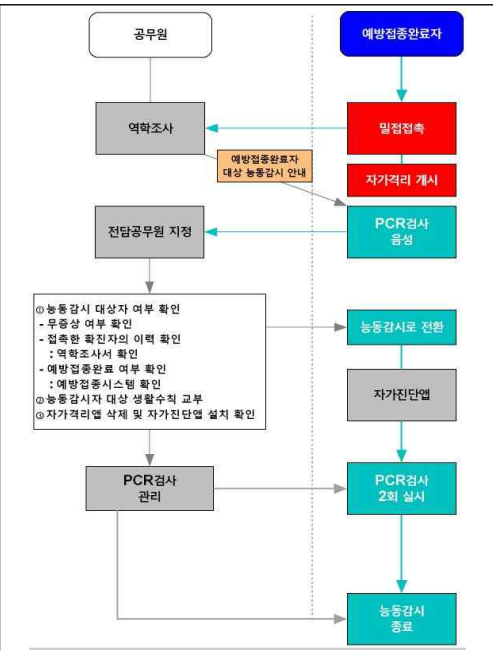
[예방접종완료자]

-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「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」 제22조에 따른 "예방접종증명서"를 소지하고 있거나,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(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)
 -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**2주가 경과된** 경우
 -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**2주가 경과된** 경우

- ②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/ ③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
- ④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 또는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
- ⑤ 접촉한 확진자가 남아공·브라질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

II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관리 절차

- ①(밀접접촉 확인 시) 즉시 자가격리(자가격리앱 설치) 및 PCR 검사
- ②(PCR검사 음성, 예방접종완료 이력 확인 후) 자가격리 앱 삭제 후 자가진단앱 설치 및 능동감시로 전환
 - 1일 1회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유선 확인
- ③(능동감시 기간 중) 총 2회 PCR 검사
 - 접촉일로부터 6~7일 및 12~13일에 PCR검사 시행
 - *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.
- ④(능동감시 종료) 두 번의 검사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 한해 능동감시 종료
 - *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,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.



* 밀접접촉자 통지시 함께 통지

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자가격리/능동감시 안내(해외입국자용)

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자가격리를 대신하여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가능합니다. 실거주지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 사실을 알리시고, 예방접종증명서(종이 또는 앱)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I 능동감시 전환 조건

① 해외출국전에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(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후 출국자)

[예방접종완료자]

○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「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」 제22조에 따른 "예방접종증명서"를 소지하고 있거나,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(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)

-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
-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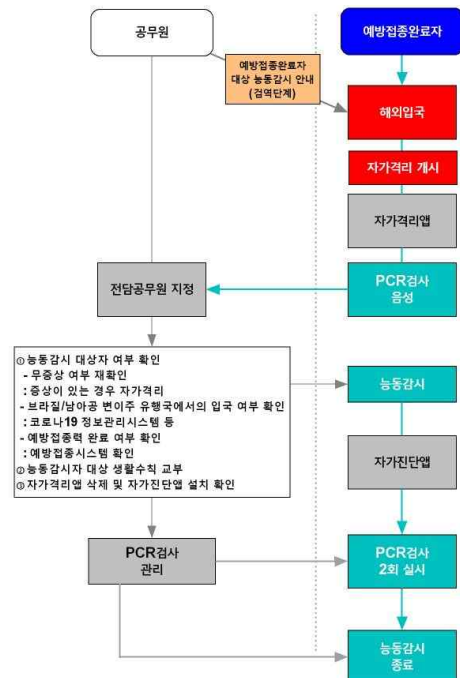
②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/ ③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

④ 남아공·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것이 아닐 것

* 입국일 당일 기준으로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가 아닌 경우에만 능동감시 전환

II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관리 절차

- ①(입국 직후-무증상자) 자가격리앱 설치,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최초 PCR 검사 실시
(입국 직후-유증상자) 검역소에서 PCR 검사 실시,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앱 설치 및 실거주지로 이동
- ②(PCR검사 음성, 예방접종완료 이력 확인 후) 자가격리 앱 삭제 후 자가진단앱 설치 및 능동감시로 전환
- 1일 1회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유선 확인
- ③(능동감시 기간 중) 총 2회 PCR 검사
- 접촉일로부터 6~7일 및 12~13일에 PCR검사 시행
*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.
- ④(능동감시 종료) 두 번의 검사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 한해 능동감시 종료
*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,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.



* 해외입국시 기타 안내와 함께 통지

능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

- ◆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,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**자가격리에** 같음하여 능동감시 대상이 되신 **예방접종완료자**에게 제공됩니다.
- ◆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- ◆ 아울러 다음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**자가격리** 또는 **시설격리로** 전환됩니다.

[자가 모니터링]

- 능동감시 기간 중에는 **자가진단앱**을 의무적으로 설치·사용하여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.
- 특히 **매일 본인의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**합니다.

- ▶ **주요증상** : 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등
- ▶ **기타증상** : 피로, 식욕감소, 가래, 소화기증상(오심, 구토, 설사 등), 혼돈, 어지러움, 콧물이나 코막힘, 객혈, 흉통, 결막염, 피부 증상 등이 다양

- **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(담당공무원)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려주시고,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**합니다. 이 때 **자가격리자에** 준하여 생활하여야 합니다.
-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자차, 도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며,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.

[기타 생활수칙]

- **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**합니다.
 - 능동감시 기간 중 출·퇴근, 등·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은 자제하고, 가정 내 머무르도록 합니다. 특히 **다중이용 시설**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.
- **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**합니다.
 - 노인, 임산부, 소아, 만성질환,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.
- **건강 수칙을 지켜주**십시오.
 - 물과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.
 -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.
 -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(2m) 거리를 유지합니다.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.
 -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.
- **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***을 자주 소독하여 주시고 **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**를 시키십시오.
 - * 테이블 위, 문손잡이, 조명 스위치, 수도꼭지, 냉장고 문고리, 키보드, 침대 옆 테이블 등

[능동감시 중 PCR검사 관련]

- **접촉일·입국일로부터 6~7일과 12~13일에 각각 PCR검사**를 받아야 합니다.
 - *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.
- 두 번의 검사가 **모두 음성인** 경우에 한해서 능동감시가 해제됩니다.
- 검사 결과 **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**해야 하며, **확진자 관련 조치**가 시행됩니다.

담당보건소: _____ 담당자: _____ 긴급연락처: _____

붙임 3 능동감시 실시 요령(예시)

□ 확진자 밀접접촉 사례

가. 밀접접촉 확인 시 업무 처리 사항(통상적인 밀접 접촉사례와 동일하게 진행)

통상절차 진행	① 즉시 자가격리통지 및 PCR검사 안내 * 자가격리통지시에 "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(밀접접촉자용)"도 함께 통지
	② 자가격리앱 설치 및 지자체 전담공무원(보건소담당자) 지정
	③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등

나. 지자체 전담공무원(보건소담당자) 업무 처리 사항

* 밀접접촉자가 예방접종완료자인 것을 확인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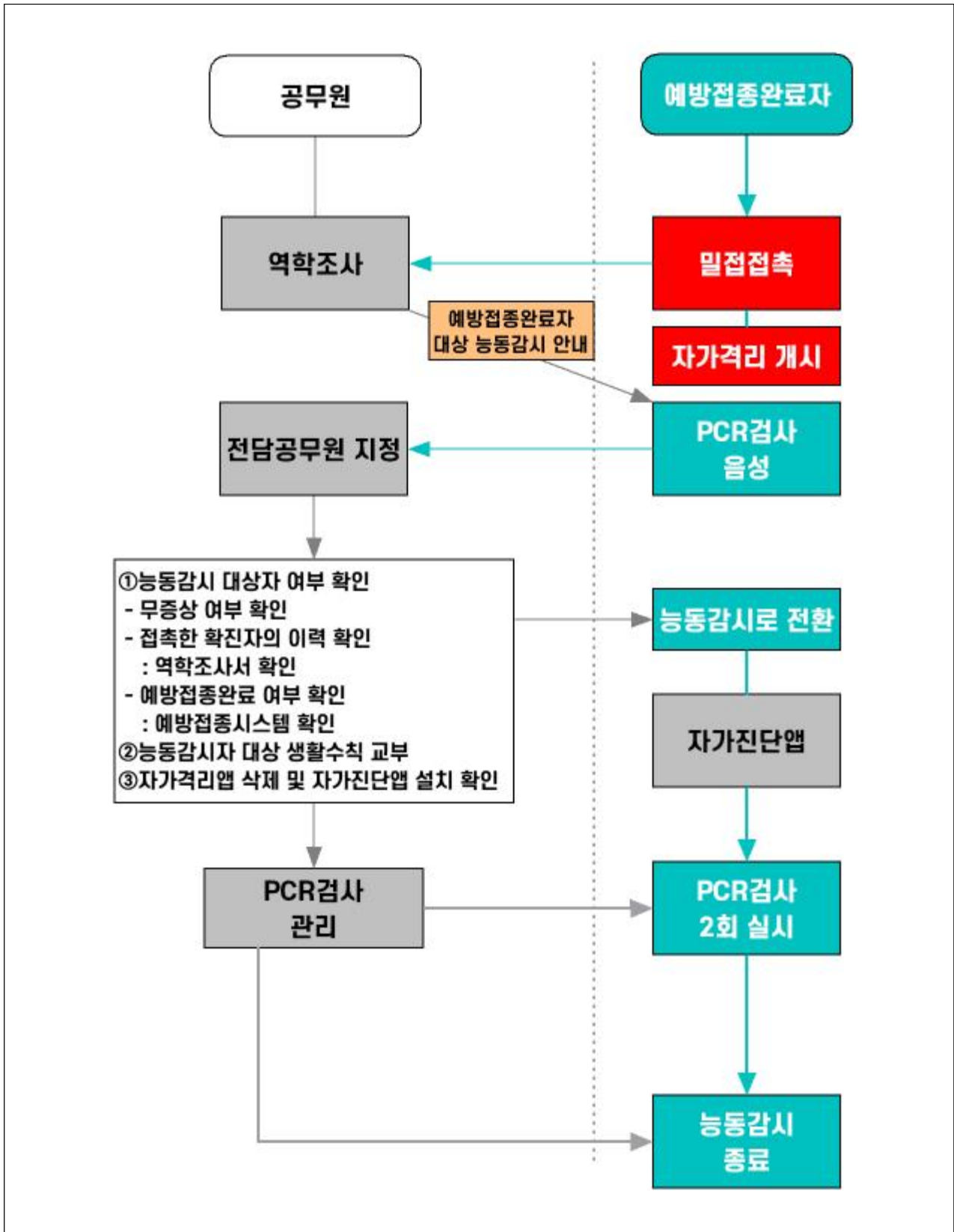
검사결과 음성인 경우	① 능동감시 대상자 여부 확인(본문 "3-2" 요건 확인) - 무증상 여부 확인 - 접촉한 확진자의 이력 확인 : 역학조사서 확인 - 예방접종완료 여부 확인 : 예방접종시스템 확인
	② 능동감시자 대상 생활수칙 교부(①의 요건 충족시/문자, 이메일 가능)
	③ 자가격리앱 삭제 및 자가진단앱 설치 확인
능동감시 기간 중	① 능동감시 실시 : 1일 1회 유선감시 ② 6~7일차 / 12~13일차 검사 사전 고지 및 결과 확인 * 자가격리 대상자이지만 2회 검사를 전제로 능동감시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 통지서 발부(검사 완료 후 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격리 기간 설정) ③ 12~13일차 검사결과 음성이 최종 확인되면 능동감시 해제 고지

* 향후 자가진단앱 기능 보강 등을 통해 검사 사전 고지 등 기능 구현 예정

※ 이 지침 시행일 당시 자가격리 중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적용례

- 확진자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의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, 이 지침 시행일(5.5)을 기준으로 능동감시 실시 요건(지침 3-2)을 모두 갖춘 경우 능동감시로 전환 가능
* 이 경우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금 등은 재산정됨
- 위에 따라 능동감시로 전환 가능한 사람으로서 이미 12일 이상 자가격리를 이행한 사람은 PCR검사 후 음성이 확인 된 경우 즉시 능동감시 해제 가능
- 능동감시 전환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가격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자가격리자로 계속 관리

<확진자 밀접접촉 관련 업무 처리 개요>



□ 해외입국 사례

가. 해외입국 시 업무 처리 사항(통상적인 입국절차와 동일하게 진행)	
입국시	○ 입국시 각종 안내서 제공 시에 "예방접종완료자 능동감시 안내(해외입국자용)"도 함께 제공
무증상자	①자가격리앱 설치 및 실거주지로 이동 안내
	②실거주지 보건소에서 최초 검사 실시 안내
유증상자	①검역소에서 검사 실시
	②음성인 경우 자가격리앱 설치 및 실거주지로 이동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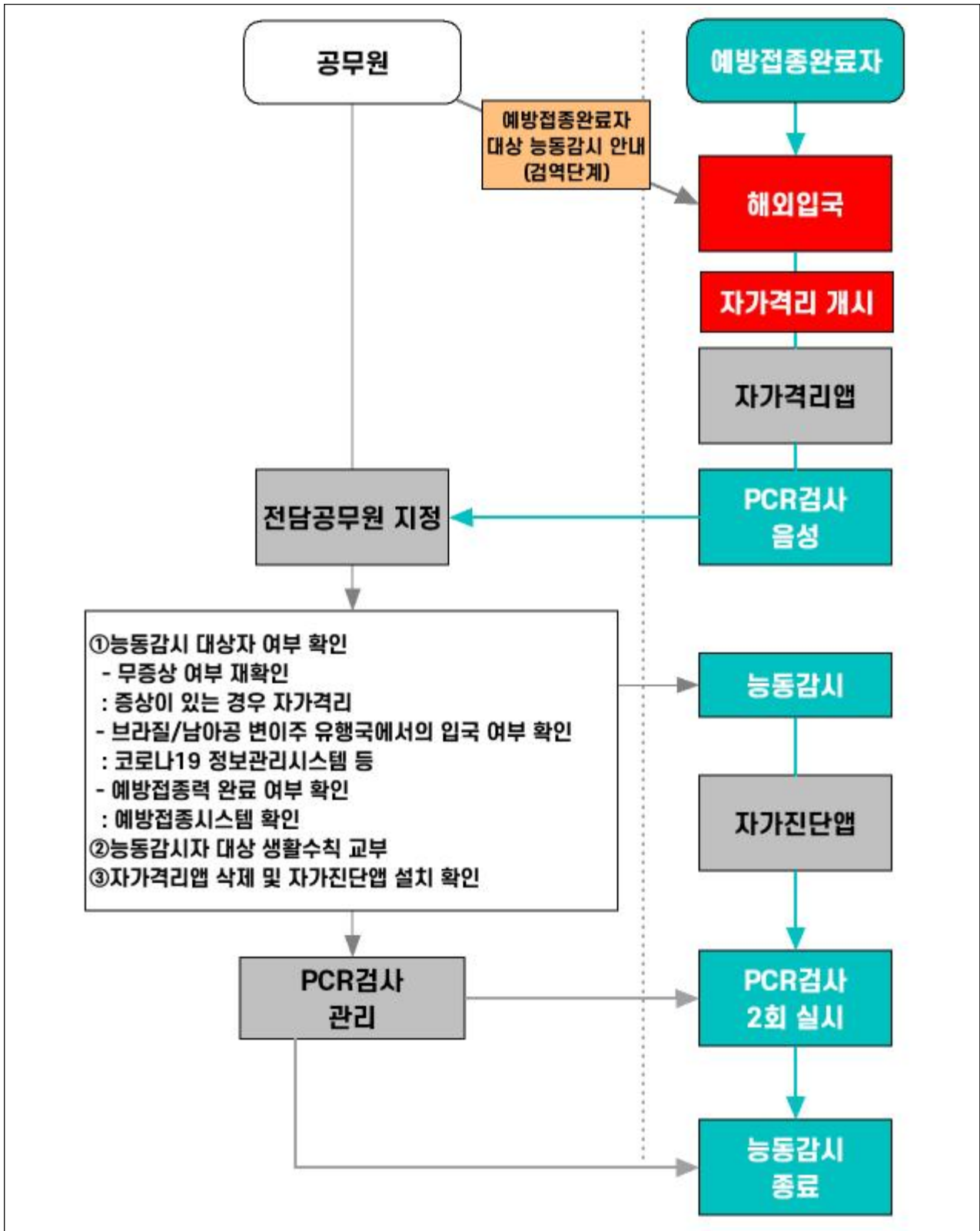
나. 지자체 전담공무원(보건소담당자) 업무 처리 사항 * 해외입국자가 "예방접종완료자"임을 알려올 경우	
검사결과 음성인 경우	①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등
	②능동감시 대상자 여부 확인(본문 "4-2" 요건 확인) - 무증상 여부 재확인(* 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) - 브라질·남아공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의 입국 여부 확인 :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등 * 입국일 당일 기준으로 브라질·남아공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가 아닌 경우에만 능동감시 전환 - 예방접종력 완료 여부 확인 : 예방접종시스템 확인, 격리통지서(출국일자 확인)
	③능동감시자 대상 생활수칙 교부(위 요건 충족시/문자, 이메일 가능)
	④자가격리앱 삭제 및 자가진단앱 설치 확인
능동감시 기간 중	①능동감시 실시 : 1일 1회 유선감시
	②6~7일차 / 12~13일차 검사 사전 고지 및 결과 확인 * 자가격리 대상자이지만 2회 검사를 전제로 능동감시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 통지서 발부(검사 완료 후 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격리 기간 설정)
	③12~13일차 검사결과 음성이 최종 확인되면 능동감시 해제 고지

* 향후 자가진단앱 기능 보강 등을 통해 검사 사전 고지 등 기능 구현 예정

※ 이 지침 시행일 당시 자가격리 중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적용례

- 해외입국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의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, 이 지침 시행일(5.5)을 기준으로 능동감시 실시 요건(지침 4-2)을 모두 갖춘 경우 능동감시로 전환 가능
 - 위에 따라 능동감시로 전환 가능한 사람으로서 이미 12일 이상 자가격리를 이행한 사람은 PCR검사 후 음성이 확인된 경우 즉시 능동감시 해제 가능
- 능동감시 전환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가격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자가격리자로 계속 관리

〈해외입국 관련 업무 처리 개요〉



붙임 4 | 남아공·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(적용기간: 6.1~6.30)

* 남아공·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은 "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"를 거쳐 정기적으로 통지 예정(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)

○ 총 13개국

: 남아공, 말라위, 보츠와나, 모잠비크, 탄자니아, 에스와티니^{추가}, 짐바브웨^{추가},
방글라데시^{추가}, 적도기니^{추가}, 브라질, 수리남, 파라과이, 칠레^{추가}

*제1판 대비 5개국 추가, '나미비아' 제외

붙임 5 예방접종이력 확인 방법

- 예방접종자(1·2차)는 확진자 밀접접촉에 따른 역학조사 시 또는 해외에서 입국 후 실거주지 보건소와 연락시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증명서(스마트폰 앱(COOV) 또는 종이증명서)를 제시(제출)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
 - 이 외에도 감염취약시설 등 선제검사 시, 기타 사적모임,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필요 시 시설 관리자 등에게 제시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

1.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확인

1-1. (예방접종자)
어플리케이션
(COOV)으로
전자예방접종증명서
제시




1-2. (확인자)
어플리케이션
(COOV)에서
QR코드 스캔하여
검증



2. 종이 증명서(예방접종 증명서)를 통한 확인

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6호서식] <개정 2020. 9. 11.>

제 No.	예방접종증명서 Certificate of Immunization		
성명 Name	생년월일 Date of Birth(Month/Day/Year)	성별 Sex	
주소 Address			
접종명 Vaccine	접종차수 Vaccination Series	접종일 Date Given(Month/Day/Year)	접종기관 Provider/Clinic
<p>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제3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 증명합니다.</p> <p>We hereby certify that all the above vaccinations were performed under Article 27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bove-mentioned Act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 년 월 일 Year month day 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질병관리청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, 의료기관장 직인 Seal 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Governor of ()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() Si/Gun/Gu, The head of () medical institution </p>			

210mm×297mm[복합지 80g/㎡(저활용종)]

붙임 6 자주 묻는 질문

Q1. 예방접종완료자는 (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)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로 규정하는데, 2주 경과일은 언제가 되는지?

- 2차 예방접종완료일: 5.1일, 2주째: 5.15일, 지침 적용일: 5.16일 0시부터

Q2. 지침 "3-2.능동감시 실시"(2쪽)의 밀접접촉자 능동감시 전환 조건 중 "⑤남아공, 브라질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(변이바이러스 확인 후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)"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?

- 능동감시 전환 여부 판단 당시 남아공, 브라질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를 **접촉하였다는 사실이** 이미 확인된 경우 → **자가격리 유지**
- 능동감시 전환 여부 판단 당시 남아공, 브라질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를 접촉한 것이 **아니라는 사실이** 이미 확인된 경우 → **능동감시 전환**
- 능동감시 전환 여부 판단 당시 접촉한 확진자가 남아공, 브라질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**즉시 알 수 없는 경우** → **능동감시 전환**. 단, 능동감시 기간 중에 선행확진자의 **변이바이러스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**

Q3. 지침 "3-2.능동감시 실시"(2쪽) 중 능동감시 전환 조건 ③~⑤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

- ③,④ 확인절차 및 방법
 - (1단계) '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바로가기' 접속
 - (2단계) 환자관리 > 접촉자관리 > 접촉자관리 > 해당접촉자 선택 > 상세보기 클릭 > 접촉자의 선행확진자명 확인
 - (3단계) 역학조사 > 기초역학조사서(확진환자) > 선행확진자명 조회 > 선택 후 상세보기 > '3. 추정 감염경로' 란에 입력된 자료를 통해 선행확진자의 해외방문력(3.1), 선행확진자의 확진자 접촉력(3.2) 정보 확인 가능
 - ※ 해당 지자체 거주자가 아닐 경우 정보조회가 불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 협조요청 필요
- ⑤ 확인절차 및 방법
 - 접촉한 확진자가 해당 지자체 거주자일 경우, 관내 해당 정보 확인
 - 접촉한 확진자가 해당 지자체 이 외 거주자일 경우, 관할 지자체에 정보 확인 요청

Q4. 능동감시 전환 시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라고 하는데, 어떤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야 하나요?

- 플레이스토어(안드로이드)/앱 스토어(iOS) 등에서 '검역신고·자가진단-질병관리청' 앱을 설치

Q5. 예방접종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?

- 예방접종완료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(COOV) 설치* 또는 종이로 된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**을 통해 예방접종 증명 가능 (1차 접종자도 접종 사실 확인 가능)
 - * 플레이스토어(안드로이드)/앱 스토어(iOS)에서 'COOV' 검색-설치 전자출입명부 방식과 동일하게 QR로 간편 인증 가능(4.14~)
 - ** **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(nip.kdca.go.kr) / 정부24(www.gov.kr) 접속하여 출력**
 - ※ 발급기관 확대 추진(접종 의료기관→읍·면·동, 6월 예정)

Q6. 해외입국자 예방접종완료자는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나요?

- 해외입국 예방접종완료자는 입국 직후 실시하는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및 능동감시 전환 대상 여부 확인 시까지 자가격리대상자입니다. 따라서,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, 자차, KTX 또는 별도 지정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.